

1. 개정 이유

개정 자살예방법('22.12.11. 시행)에 따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, 운영 근거 마련에 따라 전문 조사·연구기관의 지정 가능범위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명시

2. 주요내용

가. 전문 조사·연구기관의 지정(안제2조)

- 재단의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자살통계 수집·분석·관리를 위한 전문조사·연구기관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없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전문 조사·연구 기관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살통계의 수집·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·연구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전문 조사·연구 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	제2조(전문 조사·연구 기관의 지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5.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</u>
	<u>존중희망재단</u>
<u>5. · 6.</u> (생략)	<u>6. · 7.</u>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)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